# 유기농업자재지원

세부사업명	친환경농	<b>친환경농자재지원</b>									
내역사업명	유기농업	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예산 (백만원) 3,105								3,105	
사업목적	경영 <sup>법</sup>	○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, 지력증진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친환경	○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	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친환경	녕농어업	육성 및	Ų 유기:	식품 등으	관리·지운	실에 곱	<u></u> 한 법률	를 제1(	)조 및	Į 제16조
지원자격 및 요건		O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									
지원한도	ㅇ 유기청	등업자지	ㅐ 및 ㅈ	<b>나재원</b> 료	로: (유기)	200만원/	'ha, (	무농약)	150	반원/h	a
재원구성(%)	국고	20	7	방비	30	융자	•	-	자-	부담	50
										(단	위: 백만원)
~	구 분	201	7년	201	18년	2019년	<u> </u>	2020	년	2021	년 이후
연도별 재정투입	합 계		525.0	· '	525.0	15,525		15,52	5.0	1	5,525.0
계획 계획	국고		105.0		105.0	3,105		3,10			3,105.0
" -	지방비 자부담		557.5		657.5	4,657 7,762		4,65 7,76			4,657.5 7,762.5
		1,	762.5	Ι,	762.5	1,102	ر د.	7,70	2.5		1,102.3
담'	당기관	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									
농림축산식품								수 			1-2432
자치단체			시·군·	.구 담당	당과		최기 <sup>?</sup> 담당 <sup>;</sup>		04	44-20	1-2433
신청시기	전년도(1 <sup>-</sup>	월~)	_			사일	<b>설시</b> 항	기관	7	자치딘	·체 등
관련자료	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사업시행지침서										

# I / 사업개요

#### 1. 목 적

○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, 지력증진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
#### 2. 근거법령

○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6조

#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○ 유기물 함량(부지표) : 논,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~3%수준 유지

시키지교	2020	3	티근 3개년 실직	<del></del>	지표신출	충되비네	
성과지표	목표치	'17.	'18.	'19.P	시기	측정 방식	
■ 유기물 함량 (%,부지표)	2~3	·논·밭: 2.0 이상 ·과수·시설: 2.5이상	·논·밭: 2.0 이상 ·과수·시설: 2.5이상	·논·밭: 2.0 이상 ·과수·시설: 2.5이상	매년 3월	경지 이용형태별 유기물 함량 조사치(%)	

#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이후
합 계	15,525.0	15,525.0	15,525.0	15,525.0	15,525.0
국고보조금	3,105.0	3,105.0	3,105.0	3,105.0	3,105.0
지방비	4,657.5	4,657.5	4,657.5	4,657.5	4,657.5
자부담	7,762.5	7,762.5	7,762.5	7,762.5	7,762.5

##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#### 가. 녹비작물 종자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**농업경영정보를**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**농업인 및 농업법인** 
  - 다만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

#### 나.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**농업경영정보를**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,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 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- 다만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

#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#### 가. 녹비작물 종자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
 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\*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·대지(경작지로 이용) 등에서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(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)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(경작지로 이용)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(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)는 지원 대상에 포함
  - 2020년도 '경관보전직접지불제', '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'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워 대상에서 제외

-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·작물생육용·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,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,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"유기질비료"를 50% 이내로 지원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[별표10] "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"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. 다만, [별표10] 1.공통지원조건 "마"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
- 선정 우선순위: 유기인증 농지 〉 무농약인증 농지 〉 일반 농지(지자체 자율 결정)

#### 나.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,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기·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
 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\*는 제외하되,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1)을 성실 납부한 유기·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 하여 지원(단,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)

#### 《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(2016.6.30.제정)》

- □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
  - O (납부대상)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㎡이상 농업인으로 한정
  - 다만,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, 숙주나물, 버섯류,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m²이상을 대상에 포함
  - O (납부면제) 1천m²(농업시설재배는 330m²)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
- \*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·대지(경작지로 이용) 등에서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(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)
- ※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(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)

#### 《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》

<sup>1)</sup>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: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☎ 044-863-6202)

- '유기질비료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 및 작물생육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·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'토양개량제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(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·작물 생육용·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,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,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"유기질비료"를 50% 이내로 지원
- ※ 단,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 하도록 탄력성 부여
- 일정 녹비 생체량(500kg 이상/10a)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(시비처방서 포함)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
- \*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 (해당 품목) 기준의 50%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
-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(유리온실, 비닐하우스 등)에 한해 지원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[별표10] "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"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. 다만, [별표10] 1.공통지원조건 "마"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
-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: 유기인증 농지 〉 무농약인증 농지

#### 3. 지원 대상

- 녹비종자(5종)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  - 다만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<u>만생종</u>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- 유기농업자재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
  - \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(http://organicpro.enviagro.go.kr) → 유기농업자재정보 →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에서 확인
  - \*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.

- \* 제한여부는 농관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(http://organicpro.enviagro.go.kr)  $\rightarrow$  유기 농업자재정보  $\rightarrow$  행정처분 현황에서 확인
- 자재 원료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- 천적(25종): 갈색반날개, 굴파리좀벌, 담배가루이좀벌, 담배장님노린재, 무당벌레, 뱅커플랜트, 복숭아혹진디벌, 숨이애꽃노린재, 싸리진디벌, 쌀좀알벌, 아큐레이퍼응애, 어비진디벌, 오이이리응애, 온실가루이좀벌, 유럽애꽃노린재, 으뜸애꽃노린재, 잎굴파리고치벌, 지중해이리응애, 진디면충좀벌, 진디혹파리, 칠레이리응애, 캘리포니쿠스응애, 콜레마니진디벌, 호랑풀잠자리, 황온좀벌
  -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 업체 제품에 한하며, 화분매개곤충(뒤영벌, 호박벌 등)은 지원 제외

#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,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

#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재원: 국고, 지방비, 농협지원금 등
- 지원조건: 국고보조금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
  -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% 이상 유지
  - \* 국고 20% + 지방비 30% +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+ 자부담(20% 이상)
- 사업 의무량 :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사용 신청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녹비작물 종자(ha당)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 50kg
  -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(청)보리·호밀·자운영·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20kg,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

-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(보급종 기준)에 따르며 발아율 80% 이상 종자 공급
-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(사업년도 11월 중)
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(ha당, 총 구입비 기준): 유기인증 200만원, 무농약 인증 150만원
  -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,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,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(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, 납품계약서, 견적서 등)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\*을 비교하여 '낮은 가격'으로 결정
  - \* 공시가격은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(http://organicpro.enviagro.go.kr) → 유기농업 자재정보 →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중 가격에서 확인

#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# 1. 사업신청단계

Ш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○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·도에 시달

#### 시·군·구(읍·면·동)

- 읍·면·동은 시·군·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품목, 사업신 청기한,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, 시·도, 시·군·구에 서 소요예산 등 협조(10~11월)
- 시·군·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(필요 시 현장확인)하여, 사업 대상자를 선정, Agrix에 입력한 후, 그 결과를 시·도에 제출(1월초)
  -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,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'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 운영, <u>수단그라스(조중생종)</u>, <u>수단그라스(만생종)</u>'로, 천적은 '천적종류'로, 유기농업자재는 '상표명', 자재원료는 '사용가능 물질명'으로 입력

○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 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(1월 중)

#### 사업대상자

-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,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 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, 수량,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서(서약서 첨부)를 제출 [별지 1호 서식]
- 신청기간 : '19. 11. 1. ~ '19. 12. 31.(2개월)
- ※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(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)
-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: 동일 시·군·구내에서는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·면·동에 신청, 시·군·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·군· 구에 신청
- '녹비작물 종자 지원'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'공급 희망조합'을 지정하여야 하며,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
- \* 단, 수단그라스는 '인삼농협'중 한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: 참고 1 참조

#### 2. 사업자 선정단계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, Agrix 등록 및 각 시·도별 사업량 통보(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, 2월초)
  -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, 경제성, 국산화 정도,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  - \*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,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

#### 시·군·구(읍·면·동)

○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 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,

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선정단계에서 제외

- 시·도는 농식품부의 시·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·군·구(읍·면·동)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(2월)
  - 시·군·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, 그 결과를 [별지 3호 서식]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도 통보
  - \* 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
  -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
- 시·군·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·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,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
  -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에 신고
  -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(사업량 포함)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

#### 농현경제지주

- 각 시·군·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(3월)
  - \* 시·군·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·군·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

#### 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#### 농협경제지주

-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·공급계획 수립·보고(1월)
  -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·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(12월~1월)

- \* 국내·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, 확보가능 예상량(보증·비보증 구분) 및 가격동향 등
- 녹비종자 확보·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(국가별 수입량,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), 보증종자 확보 계획, 녹비종자 도입·공급 방식 및 절차(국산·수입산 구분),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(국산·수입산 구분), 단계별 세부추진일정, 기관별 조치·협조사항,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
- \*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,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 일정, 구매·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
-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(농가 공급은 '20.10.10까지 완료)
  - \* 품목별 공급기간 : (수단그라스) 4.10.~4.30. / (헤어리베치, 자운영) 8.10.~9.5. / (녹비보리, 호밀) 9.1.~10.10.
  -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(인삼)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

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군·구에서는 농진청(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),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·홍보·지도 실시(연중)
  -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, 파종방법,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·홍보
  - 천적을 활용한 방제,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

#### 사업대상자

○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

#### 4.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○ 시·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자금 교부

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
  -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(시군농정지원단)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(e-호조)
  - 시·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·도비를 합하여 시·군·구에 교부결정
  - 시·군·구는 국비와 시·도비에 시·군·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(시군농정 지원단)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,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(시·군·구별 사업비의 70% 이내)
- 자금 집행·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보조금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
  - 천적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,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, 구매 증빙자료 (카드 영수증,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)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
  - \*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등)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
  - 사업기간(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,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\*\*(1개월 이내)은 예외 적용)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(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)
  - \* 세금계산서, 자재구입 영수증,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·사용 시기 확인
  - \*\*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, 갱신 도래시기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·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
- 시·도(시·군·구)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,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[별지 제4호 서식]
  -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품목별 국고, 지방비,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
-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,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'20.12.31.까지 입력 완료
- 시·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 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

#### 농현경제지주

- 농협경제지주(시군농정지원단)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·군·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
  - 상반기 중에 시·군·구별 보조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
- 농협경제지주(시군농정지원단)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 공급 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·군·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

#### 사업대상자

- 천적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,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, 세금계산 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·군·구에 제출
  -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 (별지 제5호 서식) 첨부하여 시·군·구에 보조금 신청
  - \*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,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
  - \*\*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(www.enviagro.go.kr) → 인증 신청도우미 →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

#### 민간인증기관(농관원 사무소 포함)

○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,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물질인 경우 "자재사용 내역 확인서" 발급

#### 5. 이행점검단계

#### 《사후관리》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(반기 1회)
-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·제공(반기 1회)
  - \*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. 신청농가의 6%내외 선정

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도(시·군·구)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, 자금 지급상황, 실제 공급가격, 사용실태, 품질만족도,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·파종상황, 녹비작물 생육·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(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)
  -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·대상 및 공급가격의 적정성 등 검토(전수조사\*)
  - \* 주요 점검사항: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,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,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,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
  - 서류점검 결과,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(표본조사)
  - \* 단,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,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(4~6월, 9~11월)
  -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, 시·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

#### 민간인증기관

- 민간인증기관은 천적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
  - '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(자재사용내역서)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·사용·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·점검(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)

#### 《제 재》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, 보조금 환수 명령,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,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
-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

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도(시·군·구)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,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,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
  -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[별지 제2호 서식]
-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
  -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,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# 6. 성과측정단계

○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(논·밭·과수·시설) 유기물 함량(%)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

#### (별지 제1호 서식)

##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

#### 〈유기농업자재, 자재원료용〉

		자단치 명칭				ŀ	법인등록번호					경영 록번호			
	성	명							생년월	일					
신	(대표	자명)	)						성별	1			남, 0	1	
청	주	소							전화번	<u>ই</u>	(자택) (휴대 <del>-</del>				
									이메약	일					
자	농업법	인 형	태		경농조합법 농업회사법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		조금 -여부		<i>납부영</i> - <i>첨투</i>	
		[명의  계좌		(은	-행명)	<u>'</u>	()	계좌변	<u> </u> (호)						
			신청	농	지(필지)						부 신청				
읍면.	동 리·통	지번	지무	루	지적 (m²)	시설 여부	인증 구분	신청 품목	제조 업체명	신청면적 (m²)	포장 단위	신청 물량	신천 단기	성품목 가(원)	품목 소계
			1. 논 2. 빝				1. 유기인증 2. 무농약인증						* 공시	기격과 농 '입 예정 중 낮 가격을	* 신 청 물 량
		ネ	д] <del>-</del>	тн)	 적(m²)										
신*	청 소계				작(m) 랑(원)		면적당 지원기준 청품목의 공급단				등약 150민	난원/ha)			
첨	부서류	- 3	친환?	경영	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9 인증관리 정보시스템(www.enviagro.go.kr)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										
놀리.	추사신푸부야 재저사언과리 기보규저 제26조에 이하여 사기와 간이 유기녹언자재지워사언은 시														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 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.

-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:

(서명 또는 인)

읍·면·동장 귀하

#### ※ 작성 요령

-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: 단체는 '단체명', 개인은 '개인'으로 기재
- 법인등록번호, 농업법인의 형태,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
- 신청품목 : 천적은 천적종류,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,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
- 포장단위 : 신청품목별 포장단위(예시: 500㎖, 5ℓ, 20㎏ 등)를 기재
- 신청품목 단가 :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'낮은 가격'을 기재

##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

#### 〈녹비작물 종자용〉

		산자딘 의 명				법인등	록번	호			경영체 록번호		
	7	d F	녕						)	생년월일			
신	(디	]표자	명)							성 별		남,	व
청									7	선화번호		(자택)	
0	2		<u>`</u>									(휴대폰)	
자										이메일			
,		법인		영농.	조합법인,	농업회/	사법인	'	참	여농가수	<del>-</del>		<u>ই</u>
		-인명:  -급계:		(은행명	3)		(	(계좌	·번호)				
		্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(필지)							내용		
읍면.	동 라통	지번	지목	, 지조 (m²)	) 120	구분	신청 품목	포장 단위	예정가격 (원/kg)	신청면적 (m²)	신청물량 (포)	신청금액 (원)	파종시기 (월)
			1. 논 2. 밭			기인증 동약인증 반농업					당 지원	* 포장단위 × 예정가격 (원/kg) × 신 청 물 량 (포)	
		~ 건 건 건 건	<u> </u>  명 :		<u></u> 농업	협동조합	 한		 기점(	<u> </u> 연락처 :			)
공급호	희망조합	-  -		ㅇ · · · · · · ㅇ ㅂ ㅂ ㅇ ㅗ ㅂ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			
첨투	부서류	1. 2. 1. 2. 1	천환경 친환경 별지6호 농업경(	농산물인 인증관 5 서식 ' 영정보 등	5산물인증서 사본 1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(www.enviagro.go.kr)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경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(경작지로 이용)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								
-													

것에 동의합니다.

-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신청자:

(서명 또는 인)

읍·면·동장 귀하

#### ※ 작성 요령

-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: 단체는 '단체명', 개인은 '개인'으로 기재
- 법인등록번호, 생산자단체등의 형태, 참여농가수 : 단체만 기재
- 신청품목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리스(조중생종), **수단그리스(만생종)**로 구분 기재
- 포장단위: 최소 포장단위 기재(녹비(청)보리·호밀·자운영·수단그라스 20kg, 헤어리베치 5kg)
- 예정가격 :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(원)을 기재
  - \* '19년 공급예정가격(원/kg) : 녹비보리(1,887), 호밀(2,247), 자운영(6,815), 수단그라스 조중생종(5,206), 수단그라스 만생종(6,005), 헤어리베치(6,787)
- 지원 한도(ha당)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 50kg

####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-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- 1. <u>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</u> :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3. <u>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</u>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#### 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- 1. **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**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- 2. <u>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</u> :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- 3. **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**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4. <u>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</u> :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-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(별지 제2호 서식)

# 서 약 서

- 성명(생년월일):
- 주 소:
- 연 락 처 :

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, 천적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·사용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, 제재 부과금 부과, 농림사업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, 군수, 구청장 귀하

#### (별지 제3호 서식)

##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

〈시·군·구 → 사업대상자 통보용〉

수 신: ㅇㅇㅇ 귀하

20 년 월 일

발 신 : ㅇㅇㅇ 시장, 군수, 구청장 (인)

	주	소						
선 정 자	농기 (대표	가명 또자)				월 일 등록번호)		
	법 (	<u></u> 명			연	락 처		
z) 어비/	′ [o] \		합 계	국	비	지방	비	자부담
사업비(	(전)							

상기와 같이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

\*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·사용한 후, 신용카드 영수증, 계좌이체 증빙서,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, 관할 시·군·구에 보조금 청구

(별지 제4호 서식)

#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

'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시·도(시·군·구)명:

(단위 : m², kg, 원)

	지원	실적			예신	<u>·</u> 액			실 집	행액			집행	잔액		ファリスユ
지원 품목	농가수	지원면적	녹비종자 공급물량	계	국비 (20%)	지방비	자부담	계	국비 (20%)	지방비	자부담	계	국비 (20%)	지방비	자부담	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
헤어리베치																
녹비(청)보리																
호밀																
자운영																
수단그라스(조중생)																
수단그라스(만생)																
천적																
유기농업자재																
자재원료																
소계																

※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: 시·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<u>발생한 모든</u>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(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, 기획재정부)

#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○ 인증번호 :

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(허용물질)는 친환경농 어업법 시행규칙 【별표1】 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.

허용물질명*	제품명**	제품단위 (kg, ℓ, mℓ 등)	구입량 (A+B)	사용량 (A)	보관량 (B)

- \*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【별표1】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
- \*\*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(직인)

#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

#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: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경작예정내용

신고번호:

주소:

경작지주소	식재예정면적	식재년도	식재구분 (직파/이식)	임차구분

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※ 확인서 용도 :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

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

직인

# 참고1

#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

조합명	대표자	주 소	관 할 구 역
강화인삼농협	황우덕	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(032-933-5001)	인천광역시(옹진군제외)
개성인삼농협	김인수	경기 포천 호국로 1423 (031-535-3711-3)	포천, 연천, 양주, 구리, 동두천, 의정부, 남양주, 가평, 양평
경기동부인삼농협	윤여홍	경기 이천시 증신로 333 (031-635-2429)	이천, 용인, 광주, 시흥, 여주, 성 남, 하남, 안양, 군포, 의왕, 광명, 안산, 과천
김포파주인삼농협	조재열	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6-1 (031-987-0171)	김포, 파주, 고양, 인천광역시, 서울, 부천
안성인삼농협	박봉순	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(031-651-9500)	안성, 화성, 평택, 오산, 수원, 천안
강원인삼농협	이철호	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(033-435-3433)	강원도
충북인삼농협	이규보	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(043-820-3400)	충북지역[경남, 경북 일부 (구미, 김천, 성주, 고령)]
백제금산 인삼농협	신동석	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(041-832-7888, 3348)	대전, 세종, 공주, 논산, 금산, 보령, 부여, 서천, 청양, 계룡
서산인삼농협	김낙영	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(041-664-0561-2)	서산, 아산, 태안, 홍성, 예산, 당진
전북인삼농협	신인성	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(063-433-3112)	전북, 전남(일부), 광주
풍기인삼농협	권헌준	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(054-636-2714)	경북일원(구미, 김천, 성주, 고령제외)
계	11개		

## 허용물질의 종류

#### 허용물질의 종류(제3조제1항 관련)

- 1.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
- 가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
- 1)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○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(堆廐肥)	○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
○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	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
○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	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
퇴구비	를 원료로 하는 퇴비·액비의 기준에
	적합할 것
○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	○ 충분히 부숙(腐熟: 썩다)된 것일 것
○ 크를 또는 크를 전파를또 단단 되다 ○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	○ 8분의 1구(@xx; 즉덕/된 것을 것 ○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
国 国 田	자재는 이 목 1)에서 사용이 가능한
	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○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	○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)에
	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
	만을 사용할 것
○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	○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○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	○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
○ 되면 ()면 코면 카리바 로 단축하다.	거치지 않을 것
	○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
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	거치지 않아야 하고, 항생물질이 검출
○ 대두박, 쌀겨 유박, 깻묵 등 식물성	되지 않을 것 ○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
유박(油粕)류	을 것
11 1 (100/11)	○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
○ 제당산업의 부산물[당밀, 비나스	○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
(Vinasse), 식품등급의 설탕, 포도당	
포함]	
○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	○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산업의 부산물	
○ 오줌 ○ 기계 시 제 세 표	○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○ 요리의 방송되지 방송되고 있다고
○ 사람의 배설물	○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
	○ 고온발효: 50°C 이상에서 7일 이상
	발효된 것 ○ 고 의 바 >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○ 저온발효: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
L	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
	○ 엽채류 등 농산물·임산물의 사람이
	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
○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	○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·
○ 구아노(Guano: 바닷새, 박쥐 등의 배설물)	기치지 않을 것
 ○ 짚, 왕겨, 쌀겨 및 산야초	○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
	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 을 것
○ 톱밥,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	○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
○ 나무 숯 및 나뭇재	으로 가공·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
	가공・처리과정에서 페인트・기름・방
	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
	국제의 구산물을 된묘도 아이 생산인 것일 것
○ 황산칼륨, 랑베나이트(해수의 증발	○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, 단순 물리
로 생성된 암염) 또는 광물염	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
○ 석회소다 염화물	○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(危
○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	害) 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
○ 마그네슘 암석	광, 수은광 등)은 사용할 수 없음
○ 사리염(황산마그네슘) 및 천연석고 (황산칼슘)	
○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	
○ 점토광물(벤토나이트·펄라이트 및	
제올라이트 · 일라이트 등)	
○ 질석(Vermiculite: 풍화한 흑운모)	
○ 붕소·철·망간·구리·몰리브덴 및	
아연 등 미량원소	
○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	○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
	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
○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	퍼센트 미만일 것 ○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
○ 전단 단당기 못 단단될구의표설표   	○ 전전에서 ㅠ대하여야 하고 단군 물다 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,
	의 이 이 ○ 조
	1kg 중 카드뮴이 90mg/kg 이하일 것
○ 자연암석분말·분쇄석 또는 그 용액	○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	○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
	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
	은 사용할 수 없음

사용가능 물질	사용가능 조건				
○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[베이직	○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(예: 비료				
슬래그, 광재(鑛滓)]	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 산질 비료)				
○ 염화나트륨(소금) 및 해수	○ 염화나트륨(소금)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(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)일 것				
	○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- 천연에서 유래할 것				
	- 전면에서 ㅠ데될 것 - 엽면(葉面)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				
	-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				
○ 목초액	○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				
○ 키토산	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 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				
○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	○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않을 것				
○ 이탄(泥炭, Peat), 토탄(土炭, peat moss), 토탄 추출물					
○ 해조류, 해조류 추출물, 해조류 퇴적물 ○ 황					
○ 주정 찌꺼기(stillage) 및 그 추출물 (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)					
○ 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	○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아니할 것				

## 2)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

사용가능 물 질	사용가능 조건				
○ 제충국 추출물	○ 제충국( <i>Chrysanthemum cinerariae</i> folium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				
○ 데리스(Derris) 추출물	○ 데리스( <i>Derris</i> spp., <i>Lonchocarpus</i> spp. 및 <i>Tephrosia</i> spp.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				
○ 쿠아시아(Quassia) 추출물	○ 쿠아시아( <i>Quassia amara</i> )에서 추출 된 천연물질일 것				

사용가능 물 질	사용가능 조건				
○ 라이아니아(Ryania) 추출물	○ 라이아니아( <i>Ryania speciosa</i> )에서 추 출된 천연물질일 것				
○ 님(Neem) 추출물	○ 님( <i>Azadirachta indica</i> 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				
○ 해수 및 천일염	○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				
○ 젤라틴(Gelatine)	○ 크롬(Cr)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 지 않을 것				
○ 난황(卵黃, 계란노른자 포함)	○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 치지 않을 것				
○ 식초 등 천연산	○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				
○ 누룩곰팡이속( <i>Aspergillus</i> spp.)의 발효 생산물	○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않을 것				
○ 목초액	○ 「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				
○ 담배잎차(순수니코틴은 제외)	○ 물로 추출한 것일 것				
○ 키토산	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 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				
○ 밀납(Beeswax) 및 프로폴리스 (Propolis)					
○ 동·식물성 오일	○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·식물성 오일 사 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다만,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.				
○ 해조류·해조류가루·해조류추출액					
○ 인지질(lecithin)					
○ 카제인(유단백질)					
○ 버섯 추출액 ○ ㅋㅋㅋ기(미스노크) 미 ㅋ 홍홍미	○ 크크레카 베시타라라시 끄다 초.비 브리				
○ 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 -	○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아니할 것				
○ 천연식물(약초 등)에서 추출한 제재 (담배는 제외)					
○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	<ul><li>○ 별표 1 제1호가목1)에서 정해진 허용 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 (腐熟)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</li></ul>				

사용가능 물 질	사용가능 조건				
	○ 물로만 추출할 것				
<ul><li>○ 구리염</li><li>○ 보르도액</li><li>○ 수산화동</li></ul>	○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				
○ 산염화동 ○ 부르고뉴액					
○ 생석회(산화칼슘) 및 소석회(수산화 칼슘)	○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				
○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					
○ 에틸렌	○ 키위,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 용할 것				
○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	○ 천연에서 유래하거나, 이를 단순 물리 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				
○ 규산나트륨	○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 조한 것일 것				
○ 규조토	○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				
○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	<ul><li>○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</li><li>○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 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 및 수은광 등)은 사용할 수 없음</li></ul>				
○ 인산철	○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 당함				
○ 파라핀 오일					
○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					
○ 과망간산칼륨 ○ 황	○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○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 하고 사용할 것				
○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	○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 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 치지 않을 것				
○ 천적	○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				

사용가능 물 질	사용가능 조건			
○ 성 유인물질(페로몬)	○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(덫에만 사용할 것)			
○ 메타알데하이드	○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, 토양이 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(덫 에만 사용할 것)			
○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	○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			
○ 비누(Potassium Soaps)				
○ 에틸알콜	○ 발효주정일 것			
○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	○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			
○ 기계유	○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			
	○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			
○ 웅성불임곤충				

##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

	친환	경농산	물의무	자조금	급 납부 혹	확인	증	
남부 대상자 인증번호 소 재 지		- 'ト(법인)명			대표:	자		
		l 증번호	인증서 발급일					
					•			
27	-1	친환경	농산물의	무자조금	납부 내역			
인증면적(m*)								
대상년도 논	Ĥ	-7]	무농약		고지금액		납부액	
	<u>누</u> 닌	밭	논	밭				
년		J-1	10 5			원		원

상기인은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.

2018년 월 일

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



※ 문 의 처 :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 ☎ 044-863-6202